

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의 도입 방안

2012. 12. 13(목)
DMC 산학협력센터

 한국해양수산개발원

윤성순

발표순서

침식현황 및 제도도입 배경



국외 정책사례



침식관리구역 도입 방안



향후 과제

침식연왕 및 제도도입 배경

연안침식 현황

- 침식 모니터링 160개소 중 침식우려, 심각지역 65% 차지
 - ◆ '10년 대비 '11년 13% 증가
 - ◆ 바닷가 토지 유실, 시설물 및 건축물 붕괴 위협으로 국민 안전 위협 및 재산피해 증가

구 분	합 계	A(양호)	B(보통)	C(우려)	D(심각)	비고(C, D)
2011년	160	3	53	78	26	104(65%)
2010년	157	10	55	65	27	92(58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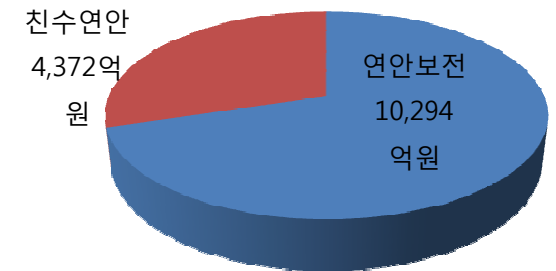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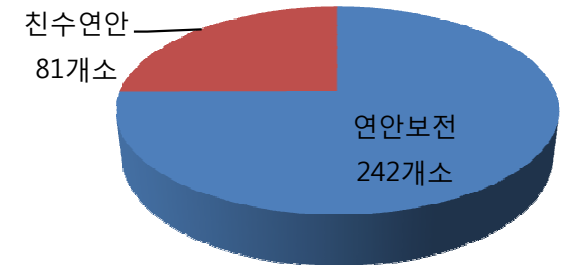


연안정비사업

연안정비기본계획

- ✓ 근거 및 주기 : 연안관리법 제42조 / 10년
- ✓ 수립주체 : 국토해양부장관
- ✓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(2009, 2012)
 - 2009년 계획 : 총 308개소, 1조 996억원
 - 2012년 수정계획 : 총 323개소, 1조4,666억원

연안정비사업 종류



연안보전



친수공간조성



해역환경개선



제도도입 배경

● 침식과 연안개발을 연계한 통합관리 대책 부재

- ◆ 침식은 연안해역~육역에서 동시 발생하지만 공간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제도 연계 미흡
- ◆ 연안해역 : 연안관리법,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
- ◆ 연안육역 :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, 건축법

구 분	관련법률	지구 및 행위제한	적용범위
재해관련 용도구 역 지정	연안관리법	재해관리구	연안해역
	국토계획법	방재지구	연안육역
	자연재해대책법	자연재해위험지구	연안육역
이용개발 인·허 가	공유수면법	점·사용	연안해역
	국토계획법/건축법	개발행위/건축물	연안육역

방재지구 : 시설물 설치를 전제로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강화

자연재해위험지구 : 시설정비 후 지구 지정 후 대부분 지구 지정 해제, 추가사업 곤란

제도도입 배경

● 사전예방적 관리 미흡

- ◆ 침식피해지역에서의 피해복구 위주의 대응사업 시행
- ◆ 기존의 연안정비사업 : 침식 진행지역에서 추가 침식 방지 목적
- ◆ 장기적 지형변화, 연안개발사업의 침식영향 등의 축적된 자료 부족

● 선(線)적 방어전략 시행

- ◆ 면적방호수단보다는 대부분 선적 방호수단 적용
- ◆ 해안선 침식(후퇴)의 저지와 같은 단순한 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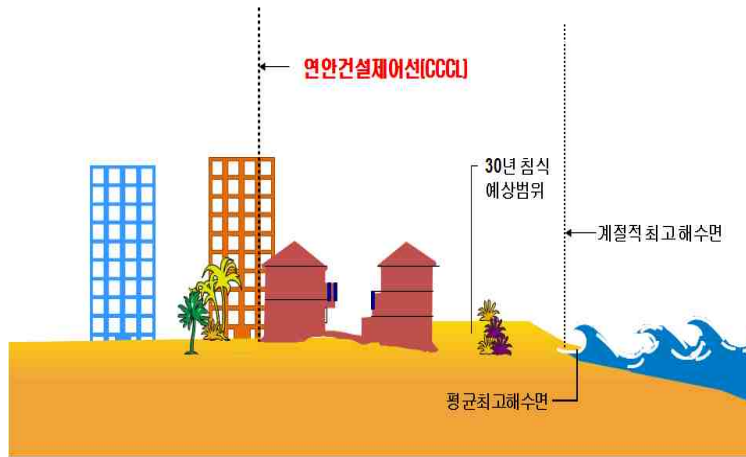


국외 정책 사례

국외 정책사례

● 미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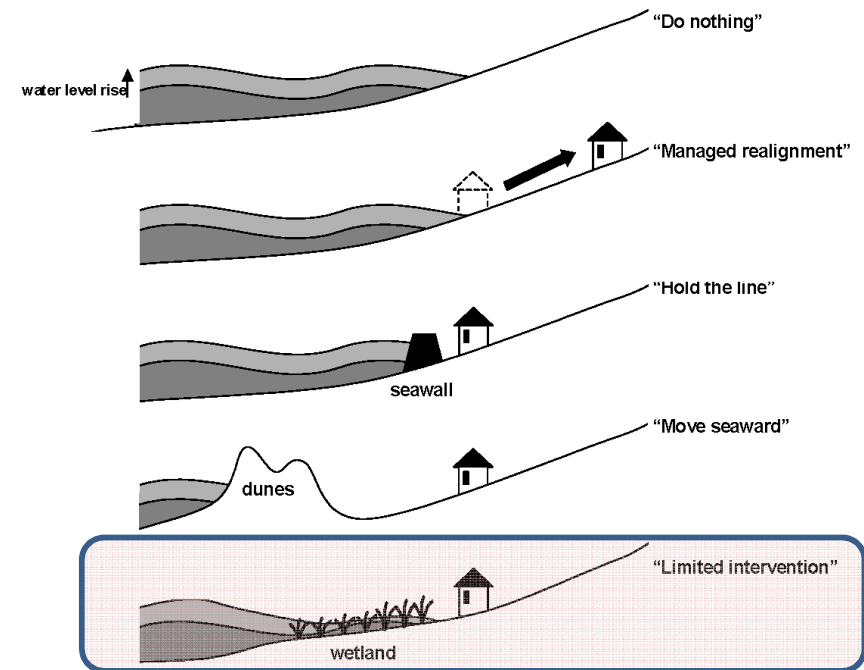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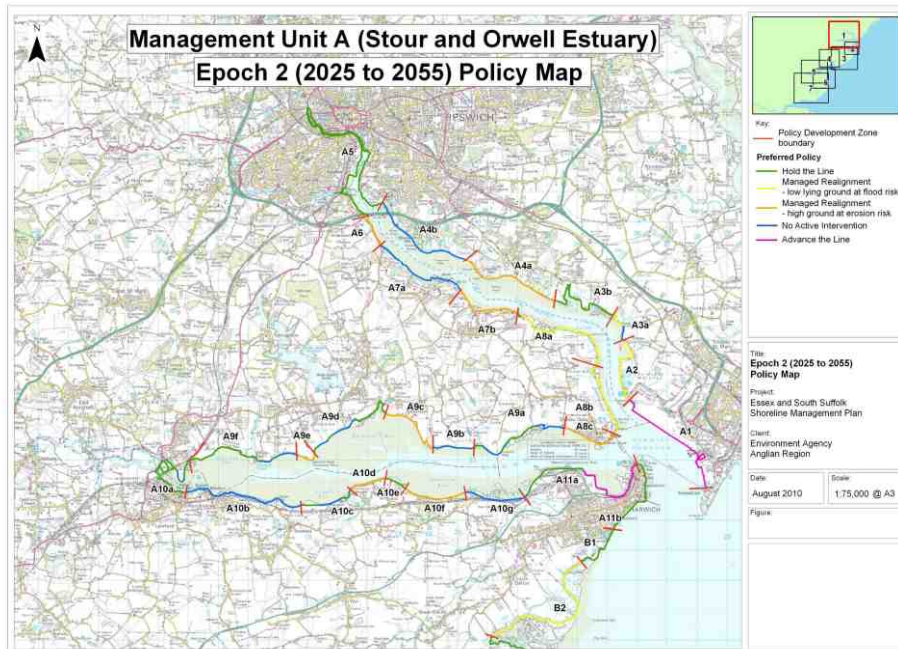
- ◆ 연안건설제어선(CCCL) : 침식률을 고려한 건축물 개발 규제



- ◆ 연안역시설물검토법(Coastal Area Facility Review Act) : 뉴저지주
 - ✓ 재해취약도에 따라 '재해심각구역', '침식재해구역', '침수재해구역'으로 구분하고 시설물 설치와 개발행위 규제
- ◆ 침식관리지역권(Erosion Control Easement)
 - ✓ 침식우심지역 개발제한에 관한 토지소유자와 토지신탁회사 혹은 행정기관 간 법률적 합의
 - ✓ 인센티브를 활용한 토지이용행위 제한 : 연방재산세 감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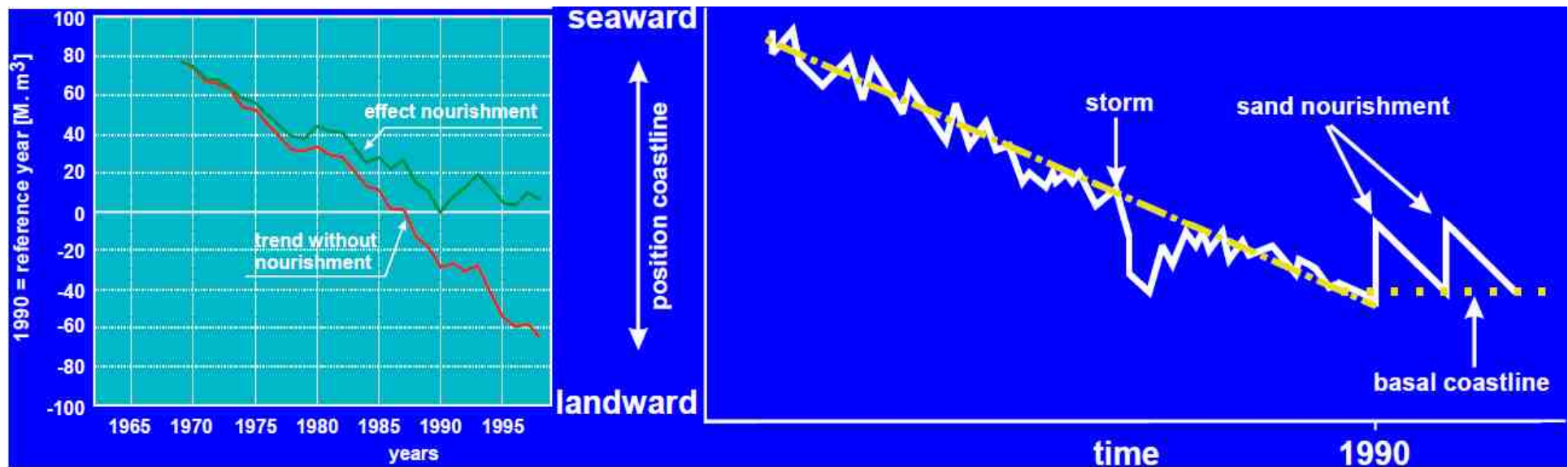
영국

- ◆ 해안선관리계획(Shoreline Management Plan) 수립, 시행
 - ✓ 침수, 침식 피해의 위험도 평가, 피해의 환경적·경제적 방호대책
 - ✓ 단위해안별 단기(0~20년), 중기(20~50년), 장기(50~100년)의 단계별 관리계획
 - ✓ 4대 전략 적용 : 무간섭, 후퇴, 유지, 전진



● 네덜란드

- ◆ 동적보존(dynamic preservation)
- ◆ 목표유지 기준해안선(Basal Coastline; BCL) 설정 : 10년 동안의 해안선 변화 조사를 기초로 작성
- ◆ 4가지 정책 : 후퇴, 선택적 보존, 보존, 확장



● 프랑스

- ◆ 미개발 자연해안선으로부터 100m 내 건축물 신축 규제(해안법)
- ◆ 자연재해지도 작성, 위험도 예측 → 강제 수용 (Barnier Act)

● 일본

- ◆ 종합토사관리정책 : 하천과 연안모래 통합관리
- ◆ 선적 방호에서 면적 방호로 전환 ('99 해안법 개정)

침식관리구역 도입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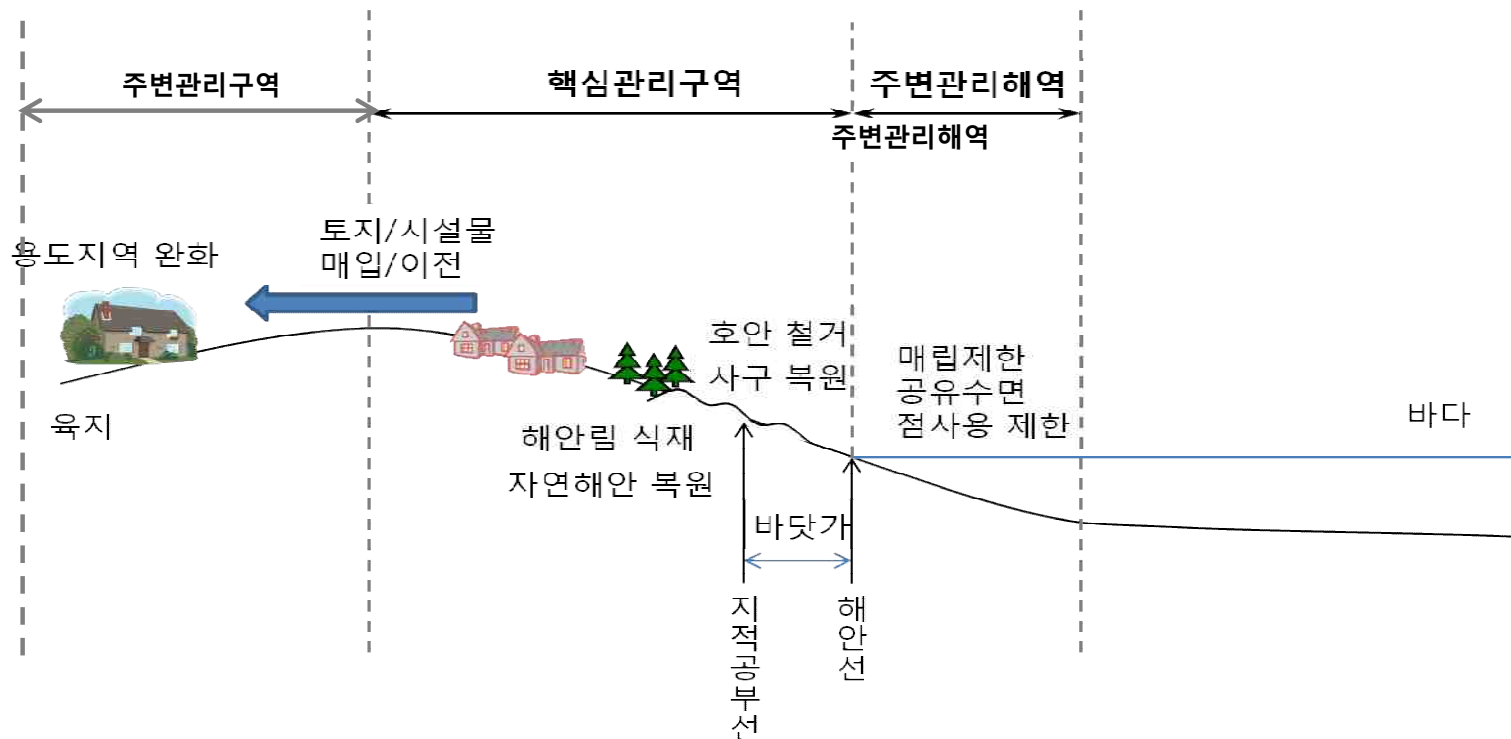
제도(안) 마련 과정

- 기간 : 2012. 6~8 (2개월)
-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: 연안침식관리를 위한 전문가 TF
 - ◆ 연안관리정책 : 국토부, KMI
 - ◆ 국토관리정책 : 국토부, 국토연구원, 대학교
 - ◆ 연안침식관련 전문가 : 연구기관, 대학교 및 엔지니어링
 - ◆ 도시계획 : 업계
- 유사 제도와의 비교
 - ◆ 각국의 연안침식대응정책
 - ◆ 방재지구, 자연재해위험지구 등의 적용
 - ◆ 기존 연안관리법의 체계 : 연안관리계획 및 정비사업
- 성과도출 방식
 - ◆ 순차적 토의주제 제안 및 정리
 - ◆ TF 참여자의 자유토론을 통한 의견 합의 방식

연안침식관리구역 개념

특징

- ◆ 육역과 해역의 통합적 관리
- ◆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정책시도 가능
- ◆ 이용행위의 규제와 상응하는 지원



침식관리구역 지정

- 근거법 : 연안관리법 (개정 추진 중)
 - ◆ 연안침식 : 파도, 조류, 해류, 바람, 해수면 상승 등에 의하여 지표가 깎이거나 모래가 유실되는 현상
 - ◆ 연안침식관리구역 : 자연적 혹은 인위적 원인으로 인해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어 특별한 관리를 위한 지역
- 관리구역 지정
 - ◆ 지정권자 : 시·도지사
 - ◆ 시·도지사가 지정하지 않을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리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1년 이내에 지정
 - ◆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
 - ◆ 지역 명칭, 위치, 범위 등 고시
- 관리구역 해제 또는 변경
 - ◆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와 침식해안이 복원되거나 피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
 - ◆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 후 고시

침식관리구역 관리계획

- 연안침식관리구역 관리계획 수립(시·도지사)
 - ◆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승인 (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)
 - ◆ 관리구역 지정시 관리계획 제출(부득이한 경우 1년 이내)
 - ◆ 계획의 내용
 - ✓ 구역의 범위
 - ✓ 관리 기본방향
 - ✓ 다른 법률 및 다른 계획, 사업과의 관계
 - ◆ 여건 변화에 따라 매5년 단위로 변경
 - ◆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각종 계획 수립 및 변경시 관리 계획 반영
 - ◆ 연안의 이용·보전 또는 관리에 관한 행위시 관리계획 준수 의무 부과

행위제한

● 핵심관리구역

- ◆ 건축물, 공작물의 신축 · 개축 · 재축 · 이전 · 용도 변경 또는 제거
- ◆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
- ◆ 바다모래 · 규사 및 토석의 채취행위
- ◆ 공유수면의 지형을 변경시키거나 해수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행위

● 주변관리구역

- ◆ 건축물, 공작물의 신축 · 개축 · 재축 · 이전 · 용도 변경
- ◆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
- ◆ 바다모래 · 규사 및 토석의 채취행위
- ◆ 공유수면의 지형을 변경시키거나 해수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행위
- ◆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

지원사항

● 침식실태조사

- ◆ 매년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실시 : 국토해양부장관
- ◆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이 관할 연안의 침식실태조사를 실시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

● 연구 및 기술개발

- ◆ 효율적 연안관리, 연안침식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의무 부여 : 국토해양부장관
- ◆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

● 관리구역 관리

- ◆ 관리구역의 침식관리 비용의 국가 보조
- ◆ 연안정비사업 또는 침식해안보전을 위한 사업시 관리구역 내 사업 우선



양우과제

-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설정 방안
 - ◆ 구역설정을 위한 대상지역
 - ◆ 침식관리선 설정
 - ◆ 구역의 범위 설정
 - ◆ 각종 제한행위의 타당성 및 지원사항 발굴
- 시범적용의 사례 연구
-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자료의 축적
 - ◆ 모니터링 확대
 - ◆ 모니터링 결과의 정보화